

유해물질의 함유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전기·전자제품

종류	함유기준
가. 납	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 0.1% 이하
나. 수은	
다. 육가크롬	
라. 폴리브롬화비페닐	
마.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	
바.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	
사.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	
아. 디부틸프탈레이트(DBP)	
자.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(DIBP)	
차. 카드뮴	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 0.01% 이하

2. 자동차

종류	함유기준
가. 납	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 0.1% 이하
나. 수은	
다. 육가크롬	
라. 카드뮴	동일물질 내 중량기준(wt)으로 0.01% 이하

비고

"동일물질"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·압착·파쇄·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, 세라믹, 유리, 금속, 합금, 종이,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.